"존중과 신뢰,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하는 북일교육"

북 일 고 등 학 교

http://www.bugil.hs.kr

북일고등학교 제22-21호	
담당부서	교무기획부
담 당 자	최 종 철
연 락 처	041-520-8600

FAX (041) 551-7116, (우) 3111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가 정 통 신 문

(관 인 생 략)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중등 출결·평가·기록 안내〗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제출시 유관기관에서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결과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아래과 같이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단, 결석기간중 평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와 같이 실시합니다.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 **(목적)**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증빙서류 수합 및 확인) 경감 지원

- **(방법)**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서식1 참조)**' 활용**

※ 활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며, 서식은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 가능

학생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학교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	승인

-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으로 한정**하며 이외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 평가 기간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발급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침 유지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table>
<tr><th>구분</th><th>통보
주체</th><th colspan="2">유형</th><th>학생
접종여부</th><th>등교중지</th><th>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th></tr>
<tr><td rowspan="8">학생
본인</td><td rowspan="3">방역
당국</td><td colspan="2">PCR 검사자</td><td rowspan="2">무관</td><td>결과 수령 시까지</td><td>• PCR 음성확인서</td></tr>
<tr><td colspan="2">확진자</td><td>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td><td>•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td></tr>
<tr><td colspan="2">PCR음성인
밀접접촉자</td><td>미완료자</td><td>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td><td>•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td></tr>
<tr><td rowspan="3">단위
학교</td><td colspan="2" rowspan="2">접촉자</td><td>접종완료자</td><td colspan="2">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td></tr>
<tr><td rowspan="2">무관</td><td>결과 수령 시까지</td><td>• PCR 음성확인서</td></tr>
<tr><td>고위험
기저질환</td><td>결과 수령 시까지</td><td>•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td></tr>
<tr><td>-</td><td colspan="2">의심증상자</td><td>무관</td><td>증상 호전 시까지</td><td>•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td></tr>
<tr><td rowspan="4">실거주
동거인</td><td rowspan="4">방역
당국</td><td colspan="2">PCR 검사자</td><td>무관</td><td>결과 수령 시까지</td><td>•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td></tr>
<tr><td colspan="2" rowspan="2">확진자</td><td>미완료자</td><td>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td><td>•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td></tr>
<tr><td>접종완료자</td><td colspan="2">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td></tr>
<tr><td colspan="2">PCR음성인
밀접접촉자</td><td>무관</td><td colspan="2">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td></tr>
</table>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①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②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③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 처리**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일 (이상반응 발생시)	접종 후 3일~ (이상반응 발생시)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결석·지각·조퇴·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2022. 3. 10.

북일고등학교장